

신탁계약 변경사항

효력발생일: 2011년 1월 28일

▶ **투자신탁명:**

54-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주요변경사유:**

- 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추가에 따른 변경
- 책임유용전문인력 변경

▶ **변경내용:**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 (정의)		<p>15. “전환”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하나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p> <p>16. “전환대상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한다.</p> <p>가. 피델리티 월지급식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 - 재간접형)</p>
제4조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p>②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계약이 정한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p>	<p>②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계약이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p>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p>⑤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p> <p>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p>	<p>⑤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환매가격 다.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p> <p>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p>

	<p>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p>	<p>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u>라.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u> <u>마. 일부환매의 경우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u></p>
<p>제27조의 2 (투자신탁의 전환)</p>		<p>① <u>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익증권을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전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3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8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환매한다. 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10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11영업일)까지 환매한다.</u></p> <p>③ <u>제1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8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8영업일(17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매수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환매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환매금이 지급되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당일 매수한다.</u></p> <p>④ <u>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전환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전환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다만,</u></p>

		<p>17시[오후 5시] 경과 후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전환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하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p> <p>⑤본 조에 따라 전환대상 투자신탁 간에 전환하는 경우 전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아니한다.</p> <p>⑥본 조에 따라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p> <p>⑦본 조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p> <p>⑧수익자가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에 따라 취득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전환처리일을 매수일로 본다) 환매수수료를 부과한다.</p> <p>⑨전환에 따른 환매에는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p>
제3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p>(투자신탁보수)</p>	<p>“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p>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해지</p>	<p>“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p> <p>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해지 3.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p>
<p>제41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②</p>	<p>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p> <p>1.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및 투자신탁과 관련한 남세신고서 작성비용 2.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3.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4.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고의, 과실, 신탁계약 위반 없이 투자신탁 관련 소송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을 포함) 5.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p> <p>1.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및 투자신탁과 관련한 남세신고서 작성비용 2.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3.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4.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고의, 과실, 신탁계약 위반 없이 투자신탁 관련 소송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을 포함) 5. 증원 등의 매매수수료 6. 증원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7. 증원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제46조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p>	<p>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할 수 있다.</p>	<p>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p>
<p>제51조 (수익자에</p>	<p>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p>	<p>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p>

대한 공고 등) 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u>분할합병</u>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부칙 (2011. . .)		<p>제1조 (시행일)</p> <p>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변경등록의 완료 및/또는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신탁계약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에 체결되어 본 계약일자로 유효한 이전 신탁계약은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해지된다.</p>